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2023. 12. 15.)에서 의결된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홍

고흥군의회 규칙 제 2023-55 호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고흥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고흥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역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7.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8. 그 밖에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을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 중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를 "제2조제1호부터 제6호"로 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제9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의 대표 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장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위촉된 심사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칙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고흥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1. 외국의 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고흥군수나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고흥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7.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8. 그 밖에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①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② ----------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삭 제>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교육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법조인, 언론인 등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1회에 한하여 연임----------.
⑤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무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
제6조(회의) ① ~ ⑤ (생 략)	제6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제한 등) ①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의장을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 ① ----------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공무국외출장의 대표 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장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	제10조(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① ----------

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의 공유) ①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보관·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군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